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3가단518409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5. 6.

판결 선고 2015. 6.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88,122원과 그중 40,621,742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4. 6. 2.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3. 6.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49,366,3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49,366,3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 1) 원고는 2011. 10.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12.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다(2012. 10. 12.경 보증금액 39,950,000원, 보증기한 2013. 10. 11.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대상은, 피고 회사의 은행채무 미변제로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상환일까지 손해금, 그 밖의 법적 절차비용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가 2012. 10. 17. 대출원금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하나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5.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40,621,742원,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은 1,666,380원이 되었다.
- 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재산상태

- 1) 피고 B은 2013. 6. 1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5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6. 17. 접수 제12747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피고 B은 2013. 6. 17.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610,233,000원) 및 고양시 덕양구 D빌라 제401호(2011. 5. 국민은행 대출시 평가액 2억 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감정평가액 1억 6,500만 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외에도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 9,921,000원, SBI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4,713,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39,949,000원, 모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768,000원,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4,573,000원, 국민카드에 대한 채무 800,000원 등 합계 201,724,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 내지 26호증의 각 1, 갑 제28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산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전국은행연합회, 국민은행, 고덕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42,288,122원(= 대위변제금 잔액 40,621,742원 + 채권보전비용 1,666,380원)과 그중 40,621,7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4.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6. 2.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자력,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다 1부터 5호층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중개업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6억 이상의 고액이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 중 일부는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일부는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결국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C에게 이전된 이후 피고 B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원물반환을 할 수 없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이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655,000,000원(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권액의 총합 604,906,050원(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G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원, 채무자 H에 대한 고덕농협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2억 원, 자립대출금 채권 104,906,050원)을 공제한 50,093,950원이다.

이는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 49,366,321원(42,288,122원과 그중 40,621,742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2014. 6. 2.까지 연 15%의 이자 7,078,199원)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원고의 피보전채권 49,366,321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용찬

별지